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윤후덕 · 김태년 · 김성범
김문수 · 김정호 · 박민규
백혜련 · 백승아 · 임미애
한정애 · 김성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신설되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권이 견지되고 있으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권이 주어지지 않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세무 대리인의 자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으

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한편,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나. 세무사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납세자등 간에 오고간 내용이나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세목의 전 주기 실무 경험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6제1항).

라.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작하려면”을 “시작하려면(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세무사와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제2조의 직무를 위임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사와 납세자등은 제2조에 따라 수임한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 등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납세자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세무사와 납세자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납세자등의 조세포탈,

금품제공,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납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
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
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자
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 를 <u>시작하려면</u>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 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야 한다.	제6조(등록) ① ----- ----- ----- ----- <u>시작하려면(세무법인</u> <u>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u> <u>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세 무사와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 게 제2조의 직무를 위임한 자 (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 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세무 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의 의 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세무사와 납세자등은 제2조

에 따라 수입한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 등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납세자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세무사와 납세자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납세자등의 조세포탈, 금품제공,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납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6개월</u>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u><신 설></u>	3. <u>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4.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 ----- ----- ----- ----- <u>1년</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u>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u> ② <u>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u>
---	--

	<u>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